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78

발의연월일: 2020. 7. 17.

발 의 자:유동수・양정숙・전혜숙

최종윤 · 김병욱 · 박 정

박성준 • 윤재갑 • 아수진비

강병원 · 김회재 · 김경만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은 신용협동조합의임원 선거운동의 방식,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항들을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음. 한편, 위 규정들을위반한 경우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.

동 조항들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,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음.

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예외를 정관

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, 선거운동의 방법 역시 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.

주요내용

- 가.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기간을 정관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,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선거운동기간을 명확히 함(안 제27조의2제3항).
- 나. 제2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방법을 총리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(안 제27조의2제4항).

법률 제 호
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제3항 중 "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의"를 "후보자등록마감일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필요 한"을 "관한 세부적인"으로, "정관으로"를 "총리령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의2(임원의 선거운동 제한)	제27조의2(임원의 선거운동 제한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은	③
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	후보자등록마감일의
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	
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	
할 수 있다.	
④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	4
법 등에 <u>필요한</u> 사항은 <u>정관으</u>	<u>관한 세부적인</u>
<u>로</u> 정한다.	<u>총리령으로</u>